

제 호

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

1. 업체명:
2. 대표자:
3. 사업자등록번호:
4. 주 소:
5. 유효기간:
6. 품질인증 업무의 종류:

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

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
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직인